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
- 건물 -

고유번호 1946-1996-175845



[건물]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05

【 표 제 부 】 (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2002년2월19일	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05	목조 스테트지붕 단층주택 36.36㎡ 부속건물 시멘트 블록조 스테트지붕 단층 공장 및 창고 16.53㎡	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07월 13일 전산이기
2		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05 [도로명주소]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로118번길 20-5	목조 스테트지붕 단층주택 36.36㎡ 부속건물 시멘트 블록조 스테트지붕 단층 공장 및 창고 16.53㎡	도로명주소 2012년10월8일 등기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 (전 1)	소유권보존	2002년2월19일 제2589호		소유자 서윤복 551010-***** 부산 서구 토성동 1가 8-29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07월 13일 전산이기
1-1	1번등기명의인표시 변경		2006년1월17일 전거	서윤복의 주소 부산 서구 토성동1가 12-1 삼협아파트 306호 2006년5월4일 부기

[건물]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05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2	소유권이전	2006년5월4일 제5758호	2006년4월28일 증여	소유자 허정순 340208-*****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23
3	2번소유권이전등기 말소	2016년3월25일 제3879호	2016년3월21일 합의해제	
4	소유권이전	2023년11월15일 제11195호	2023년10월30일 증여	소유자 김남연 711009-*****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372-15, 107동 1402호 (주례동, 주례한일유엔아이아파트)
5	가압류	2024년9월6일 제9041호	2024년9월6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가압류 결정(2024카단1 03106)	청구금액 금28,138,116 원 채권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110111-0003204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(여의도동, 63한화생명빌딩)
6	강제경매개시결정(5 번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)	2025년3월17일 제1030530호	2025년3월17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 정(2025타경306 87)	채권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10111-00032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(여의도동)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

기록사항 없음

-- 이 하 여 백 --

관할등기소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'기록사항 없음' 으로 표시함.
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의 사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946-1996-175845

[건물]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05

1. 소유지분현황 (갑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김남연 (소유자)	711009-*****	단독소유	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372-15, 107동 1402호 (주례동, 주례한일유엔아이아파트)	4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5	가압류	2024년9월6일 제9041호	청구금액 금28,138,116 원 채권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	김남연
6	강제경매개시결정	2025년3월17일 제1030530호	채권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	김남연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구)

- 기록사항 없음

[참 고 사 항]

-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